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주기
20만 톤오이 이상	1. 전체진단: 5년 2. 부분진단: 3년
20만 톤오이 미만	5년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톤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톤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톤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